학술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2015. 3.

교 무 처 학 사 과

학술적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

I. 지침시행 배경

-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시기부터 <mark>학문윤리</mark>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 학생 스스로 <mark>부정행위</mark>를 가볍게 보는 경향을 불식시키고 <mark>학문 </mark>윤리의식을 깨닫게 하여 향후 졸업논문이나 <mark>리포트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기 위함</mark>
 - ※ 2006년도 국정감사 시 김영춘 의원 지적사항(대학에서 학술적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 으로 개선 과제임

Ⅱ. 적용 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특수·전문대학원 포함) 전체

Ⅲ. 실시 방안

- 1. 교수계획표에 입력
- "표절 등 학술적 부정행위 예방교육"사항을 공통적으로 입력 ※ 학사관리과에서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입력
 - 2. 교육 실시 개요
- 가. 교육시기 : 매 학기 초(가능한 1~2주 이내) 수업시간에 실시
- 나. 교육시간 : 10 ~ 20분 정도
- 다. 교육내용(붙임)
-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
- 외국대학 표절 관련 교육 사례
 - ※ 강의담당 교수가 (붙임)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 가능
 - □ <mark>시험부정행위 방지 지침</mark>은 현행과 같이 중간·기말고사 전에 별도 시행

□ 부정행위 유형 예시 및 용어의 정의

① 부정행위 유형

- ⓐ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b) 논문을 대필하거나 기존의 논문을 짜깁기 하는 행위
- ⓒ 다른 사람의 논문 등을 돈을 받고 사는 행위
- d) 다른 사람의 논문 등을 돈을 받고 대필해 주는 행위
- (e) 자신이 쓴 논문 등을 다른 학생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 (f)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나 숙제를 자신의 행위로 제출하는 행위(논문은 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제출하는 모든 종류의 논술식 과제물 포함)
- g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베끼는 행위
- (h) 온라인 유료 리포트 사이트에서 과제를 베끼는 행위
 - ② 용어의 정의
- ②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⑤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만들어 내는 행위
-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외국 대학의 표절 관련 징계 및 교육 사례

대학명	표절 관련 징계 현황	표절 예방을 위한 교육
프린스턴 대학	。 '04-05년도 15건의 학술관련 징계 발생. 대부분이 표절과 관련. 9명의 학 생들이 표절로 인해 1년간 정학, 1명 의 학생이 표절로 인해 퇴학 처분	●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Academic Regulation(학술적 규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모든 리포트, 에세이, 실험 보고서 등의 말미에 "This paper represents my own work in accordance with University regulations" (이 글은 학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쓰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예일 대학	。 '04-05년도 총 30명의 학생이 표절을 포함한 부정행위로 적발, 이중 2명이 정학, 6명이 집행유예, 10명이 견책의 처분을 받았으며, 학사학위가 취소된 학생도 있었음	 교수들이 매 학기 초 배부하는 강의계획서에 표절이란 무엇이며 표절을 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처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텍사스 주립대학	。 '04-05년도 총 징계건수 중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관한 징계는 약 31.4%,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은 표절로 1년간 122케이스가 적발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었음	○ 교수들이 매 학기 초 강의계 획서를 통해 표절이 무엇을 의 미하며 표절과 관련된 학칙에 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관해 정확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표절 관련 학칙 및 이를 위반 할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를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김영춘 국회의원 자료를 참고 하였음